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05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이종배 · 이현승 · 김기웅
김미애 · 서지영 · 서명옥
박충권 · 이인선 · 엄태영
권영진 · 최보윤 · 최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6조).
- 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안 제25조제2항 등).
- 다.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3조).
- 라.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전력계통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인 상태 또는 전력설비 고장 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 및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아니하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을 “심의·의결(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그 밖의”를 “송전·배전망 접속 또는 연계 기준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위원회의 심의를”을 “전

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의 대상이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기위원회의 심의를”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의 대상이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 제목 중 “전기품질의”를 “전기품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 혹은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로,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무원(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를 “공무원(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심의를”을 각각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을 “심의·의결(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48조에 따른 기금으로 출연한

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심의를”을 “심의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송전·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배전 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력감독원은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의 설비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각각 “전력계통 신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전력계통의”를 “전력계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력계통의”를 “전력계통”으로, “실시하고”를 “매년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기사업자에게”를 “전기사업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력계통의”를 “전력계통”으로,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심의를”을 각각 “심의·의결을”로 한

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수요관리사업자”를 “수요관리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를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한다.

-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하여 적절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 ①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 관련 자료의 제출
2.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
3. 기타 공정한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에너지원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에 따른 과징금

제53조제1항 중 “조성”을 “조성,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로, “심의와”를 “심의·의결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을 “전기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를 “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

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장: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2. 상임위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위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

⑤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3급”을 “2급”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 또는 변호사”를 “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고”를 “심의·의결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제10호의3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심의사항”을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0의3. 제27조에 따른 송전·변전설비계획, 배전설비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13의2. 제41조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13의3. 제45조제4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13의4. 제45조의2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에 관
한 사항

13의5. 전력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및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
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건의
할 수 있다.

제58조의 제목“(의결정족수)”를“(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는”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으로,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그”를 “심의·의결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전검토 등”으로 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제6장의2(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책무 이행 및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도 개발 및 감시·조사 등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전력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전기위원회가 임명한다.

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지원
2.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등록, 약관, 요금에 관한 기술 지원
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정보공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4. 송전·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15조에 따른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술 지원
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술 지원
7.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
8.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기술 지원
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지원
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12.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조사, 평가 등 업무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겸직의 제한)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60조의8(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0조의9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0조의10에 따른 분담금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0조의9(출연금 또는 보조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10(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11(관리·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를 통하여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기위원회
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에 대한 기준 마련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조사

제9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

제10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0조의1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105조제1호 중 “제16조제5항을”을 “제16조제7항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
호 중 “제16조제4항을”을 “제16조제6항을”로 한다.

6의2.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전력감독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력감독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전력감독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전력감독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지원받는다.

제3조(전기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으로 본다.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② ~ ④ (생략)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⑥·⑦ (생략)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5

억원-----
-----.

1.·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

-----송전·배전망 접속 또는 연계 기준 등 그 밖의

-----.

② -----

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의 대상이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③ 전기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의 대상이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
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
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
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
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아니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
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
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
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

심의·의결을

심의·의

결을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징수) ① -----

심의·의결(전

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
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송전사업자는 송전·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배전 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력감독원은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의 설비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① -----
 --전력계통 신뢰도의-----

 -----.

② -----전기사업자등은-----
 -----전력계통-----
 -----.

③ -----

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심의·의결을-----

-----.

④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심의·의결을-----

-----.

④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무에 관한 감독) ①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 관련 자료의 제출
2.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
3. 기타 공정한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에너지원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의 안정성·경제성·환경성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0의2. (생략)

제49조(기금의 사용) -----

1. ~ 1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 · 12. (생 략)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 설>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0의3.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1. · 12.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

-.

1. 제24조에 따른 과징금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조성,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

-심의 · 의결과-----

-----전기위원회를-----.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구분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 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

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을-----
--.

1. 위원장: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2. 상임위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위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⑤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

-----.

1. 2급-----공무원(고위공무

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람

3. ~ 5.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
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
정을 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11. ~ 13. (생략)

<신설>

<신설>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을 포함한다)-----

2. -----검사·변호사 또는 공
인회계사-----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
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

---심의·의결하고-----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25조에 따른 기본계획
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0의3. 제27조에 따른 송전·변
전설비계획, 배전설비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1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41조에 따른 정보 공
개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13의3. 제45조제4항에 따른 송
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신 설>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범위에 관한 사항

13의4. 제45조의2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감독에 관한 사항

13의5. 전력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4. -----
--심의·의결사항-----

15. -----심
의·의결을-----

②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 및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건의할 수 있다.

제58조(회의) ① -----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

<신 설>

<신 설>

<신 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60조(조직 및 운영) <신 설>

(생략)

장이 소집한다.

②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
----심의·의결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전검토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조직 및 운영) ①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책무 이행 및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도 개발 및 감시·조사 등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전력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전기위원회가 임명한다.

<신 설>

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전력시장 · 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지원
2.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 · 등록, 약관, 요금에 관한 기술 지원
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정보공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4. 송전 · 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 · 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술 지원
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술 지원
7.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 · 평가 및 조사
8.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기술 지원
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지원
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

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
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
한 사항

1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12.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
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
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에 따른 조사, 평가 등 업무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신 설>

제60조의7(겸직의 제한) 전력감독
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
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신 설>

제60조의8(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0조의9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0조의10에 따른 분담금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60조의9(출연금 또는 보조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10(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는 전기사업자는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11(관리·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를 통하여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신 설>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생략)

<신 설>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

④·⑤ (생략)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 7.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조사

④·⑤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1. 2. (현행과 같음)

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

제102조(벌칙)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0조의1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벌칙) -----

 -----.

1. 제16조제7항을-----

1의2. ~ 7.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4. (생략)

③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6항을-----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